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관련 공청회 - 사전 검토 자료 -

(한국조달연구원, '17.10.23)

## 1. 행사 개요

- 목적 : 시범사업 대상 문화재수리 모니터링 주요 결과 보고 및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일시 : 2017.10.27.(금) 13:30 ~ 15:30
- 장소 :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
- 주최 : 문화재청
- 주관 : 한국조달연구원
- 세부일정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13:00~13:30	30'	등 록	-
13:30~13:35	5'	인사말	-
13:35~14:15	40'	시범사업 모니터링 주요결과 보고 및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설명	한국조달연구원
14:15~15:25	70'	질의응답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한국조달연구원
15:25~15:30	5'	마무리 및 향후 일정 안내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장
15:30~16:00	30'	휴 식	-
16:00~16:55	55'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개정안 설명	한국건축문화연구소
16:55~17:55	60'	질의응답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한국건축문화연구소
17:55~18:00	5'	마무리 및 향후 일정 안내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장

-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관련 공청회 발표 자료는 당일 배포 및 공청회 이후 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www.kip.re.kr](http://www.kip.re.kr))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관련 공청회 이후 오후 4시부터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개정 관련 공청회(주최: 문화재청, 주관: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가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 주요 진행경과

- '16.09월 문화재수리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 제정
  - (국가계약법 관련)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문화재청 예규 제 169호, '16.09.19)
  - (지방계약법 관련)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 65호, '16.09.21)
- '16.09월 2016년도 시범사업 15건 고시
- '16.09월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제 16차 T/F 회의
- '16.10월 문화재수리 계약예규(낙찰자결정기준) 시범사업 발주자 대상 설명회 및 지역별 설명회 5회(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실시
- '16.12월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제 17차 T/F 회의
- '17.01~02월 2017년도 시범사업 45건 고시
- '17.03월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제 18차 T/F 회의
- '17.03월 문화재수리 계약예규(낙찰자결정기준) 시범사업 발주자 대상 설명회 및 지역별 설명회 3회(서울,대전,대구) 실시
- '17.07월 문화재수리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 (국가계약법 관련)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시행 2017.7.10.] [문화재청 예규 제180호, '17.7.5.,일부개정]
  - (지방계약법 관련)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17.7.10.] [행정자치부 예규 제 95호, '17.7.7.,일부개정], [시행 2017.7.26.][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2017.7.26.,타법개정]
- '17.08월 2017년도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 1건 추가
- '17.08월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제 19차 T/F 회의

### 3. [既] 주요 개정 내용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사항 반영 및 ‘16년 9월 시범사업 시행 이후 유·무선, 지역별 설명회 및 시범사업 발주자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접수된 개선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

\* 아래 내용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제정된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기존: 행정자치부 예규 제 65호, ‘16.09.21 / 개정(현행):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17.07.26 )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연번	구분	기존	개정(현행)	비고
1	조문 제8조제4항	제8조(입찰서 등의 제출) ④ 입찰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입찰서 제외)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입찰서 등의 제출) ④ 입찰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입찰서 및 문화재수리 계획서는 제외한다)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가 보완을 요구할 수 없는 입찰서류 변경
2	조문 제14조제1항	제14조(공동수급체 심사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 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공동수급체 심사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 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에 따른 부대문화재수리만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공동수급체 심사 시 심사제외 대상 신설
3		제14조(공동수급체 심사방법) ② 공동수급	제14조(공동수급체 심사방법) ② 공동수급	분담이행 시 배치

	<p>조문 제14조제2항</p>	<p>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의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 략) 나.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은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대상으로 심사한다.</p>	<p>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의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 략) 나.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은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대상으로 심사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복합업종으로 심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심사한다.</p>	<p>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방법 신설</p>
4	<p>조문 제16조제2항</p>	<p>제16조(낙찰자 결정) ② 종합점수가 최고 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p>	<p>제16조(낙찰자 결정) ② 종합점수가 최고 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 문화재수리계획 평가점수가 높은 자(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 문화재수리에 한한다) 2. 수리이행능력점수가 높은 자(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까지만 적용한다) 3. 입찰금액이 낮은 자 4. 추첨</p>	<p>최고점자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 결정 순서 변경</p>
5	<p>[별표 1] 입찰등급 심사항목 및 결정기준</p>	<p>[별표 1] 중요민속문화재</p>	<p>[별표 1] 국가민속문화재</p>	<p>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중요민속문화재’ 용어 변경</p>

6	[별표 2] 문화재 수리 분류표	[별표 2] ※ 유적지 :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등 면단위로 지정된 문화재구역	[별표 2] ※ 유적지 : 유적 정비, 발굴지 정비, 탐방로 정비, 진입로 정비 등 토지의 정비 등	유적지 용어 명확화
7	[별표 3-1] 입찰 등급 1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	[별표 3-1] 보수교육	[별표 3-1] 전문교육	문화재수리법 개정에 따라 ‘보수교육’ 용어 변경(이하 동일용어 동일변경)
8	[별표 5] 수리 이행능력 세부심사 방법-수리실적 심사	<p>[별표 5] 1) 수리실적 심사는 각각의 실적에 대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다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능력평가를 위해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p> <p>가)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다만,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문화재수리에 대한 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p> <p>나) 「문화재보호법」 제36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민간발주에 한함)</p> <p>다) 해당 문화재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p>	<p>[별표 5] 가. 수리실적 심사는 각각의 실적에 대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다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능력평가를 위해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p> <p>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 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 49 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 76 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인 발주하는 문화재수리의 경우 : 발주자가 발급한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 4 호 서식)</p> <p>2) “1)” 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문화재수리의 경우 :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p>	<p>실적 증빙서류를 수리능력 평가 신청서류 기준으로 변경(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동일)</p>

		<p>급자 보관용) 사본(민간발주에 한함)  * 민간발주 :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발주한 공사</p>	<p>(별지 제 4 호 서식)  3) “1” 및 “2”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한 문화재수리의 경우 : 다음의 서류 전부. 다만, “1” 및 “2” 에 따른 문화재수리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다)” 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가) 문화재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급한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 4 호서식). 다만,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문화재수리의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나) 해당 문화재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 49 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100 조제 30 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사본  다) 「문화재보호법」 제 36 조 및 제 74 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p>	
9	[별표 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 방법-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심사	[별표 5] 바) 고용보험피고험자격내역서(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각각 제출)	[별표 5]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에 한한다.	입사일 증빙서류 추가 (보유기술자 및 기능자 심사도 동일)
10	[별표 5] 수리이	[별표 5]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별표 5]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행능력 세부심사 방법-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심사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현장배치 확인서류 추가
11	[별표 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 방법-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심사	[별표 5] 4) 해당 자격 취득 년수 산정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6개월 이상 근무자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상시 근무한 자를 말한다. 다만, 동등이상의 경력을 가진 기술자 또는 기능자(동일한 경력계수를 가진 기술자 또는 기능자를 말한다)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 된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면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별표 5] 라. 해당 자격 취득 년수 산정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6개월(180일) 이상 근무자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연속해서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한 자를 말한다. 다만, 동등이상의 경력계수를 가진 기술자 또는 기능자로 입사일이 퇴사일 전후 30일 이내이고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합산(1회에 한하여 합산할 수 있다)하여 6개월(180일) 이상이면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근무기간 (6개월) 산정 시 합산조건 구체화
12	[별표 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 방법-영업정지 처분 심사	(신 설)	[별표 5] 3) “최근 5년간” 이란 해당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영업정지 처분 심사 시 기준일 명확화
13	[별표 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 방법-안전관리 심사	[별표 5] 4) ‘건설업 재해율의 가중평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행한 산업재해 통계의 최근 3년 간 ‘건설업’ 기준 재해율의 가중평균으로 한다.	[별표 5] 4) ‘건설업 재해율의 가중평균’ 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1000대 건설업체 평균 환산재해율’ 의 가중평균으로 한다.	안전관리 심사 시 건설업 재해율 기준 명확화
14	[별표 5] 수리이	[별표 5] 1)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는 공동계	[별표 5] 1)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는 공동계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

	행능력 세부심사 방법-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약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한다.	약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된 문화재수리의 업종만을 심사할 경우에는 심사대상 문화재수리의 업종 내 공동수급체 구성에 한하여 심사한다.	가점적용 기준 명확화
15	[별지 제6호 서식]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신 설)	[별지 제 6호 서식] 발급기준일	발급 기준일 명기란 추가

## 4. 개정안 검토

□ ‘16년 9월 시범사업 시행을 기점으로 접수된 주요 개선 건의, 시범사업 모니터링 분석결과,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T/F’ 회의 검토결과(‘17년 8월말)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 후 제시된 주요 개정안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아래 내용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호, ‘17.07.26)”을 기준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연번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심사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심사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비대상)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대상)	2등급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비대상)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대상)	2등급	
1	[별표 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수리실적 심사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문화재 수리실적	20 (10)	A. 300% 이상	20.0	10.0	20.0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문화재 수리실적	20 (10)	A. 200% 이상	20.0	10.0	20.0	수리실적 평가기준 비율 하향 조정
					B. 200% 이상	19.3	9.65	19.5				B. 150% 이상	19.3	9.65	19.5	
					C. 100% 이상	18.6	9.30	19.0				C. 100% 이상	18.6	9.30	19.0	
					D. 100% 미만	17.9	8.95	18.5				D. 100% 미만	17.9	8.95	18.5	
2	[별표 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신 설)						* ‘최근 5년간’ 이란 착공일과 관계 없이 해당 수리가 준공된 시점이 입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최근 5년’에 대한 기준일 명확화		

3	<p>[별표 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심사 분야</th> <th rowspan="2">심사요소</th> <th rowspan="2">배점</th> <th rowspan="2">평가 기준</th> <th colspan="3">평가점수</th> </tr> <tr> <th>1등급 (문화재 수리계 확심사 비대상)</th> <th>1등급 (문화재 수리계 확심사 대상)</th> <th>2등급</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배치 기술 자 능력</td> <td rowspan="3">최근 5년 간 해당 문화재수 리와 동</td> <td rowspan="3">10 (7.5)</td> <td>A. 5건 이상</td> <td>10.0</td> <td>7.5</td> <td>7.5</td> </tr> <tr> <td>B. 4건 이상</td> <td>9.5</td> <td>7.0</td> <td>7.0</td> </tr> <tr> <td>C. 4건 미만</td> <td>9.0</td> <td>6.5</td> <td>6.5</td> </tr> <tr> <td rowspan="3">배치 기능 자 능력</td> <td rowspan="3">등 이 상 수 리 를 수 행 한 환산건수</td> <td rowspan="3">10 (7.5)</td> <td>A. 5건 이상</td> <td>10.0</td> <td>7.5</td> <td>7.5</td> </tr> <tr> <td>B. 4건 이상</td> <td>9.5</td> <td>7.0</td> <td>7.0</td> </tr> <tr> <td>C. 4건 미만</td> <td>9.0</td> <td>6.5</td> <td>6.5</td> </tr> </tbody> </table>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 기준	평가점수			1등급 (문화재 수리계 확심사 비대상)	1등급 (문화재 수리계 확심사 대상)	2등급	배치 기술 자 능력	최근 5년 간 해당 문화재수 리와 동	10 (7.5)	A. 5건 이상	10.0	7.5	7.5	B. 4건 이상	9.5	7.0	7.0	C. 4건 미만	9.0	6.5	6.5	배치 기능 자 능력	등 이 상 수 리 를 수 행 한 환산건수	10 (7.5)	A. 5건 이상	10.0	7.5	7.5	B. 4건 이상	9.5	7.0	7.0	C. 4건 미만	9.0	6.5	6.5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심사 분야</th> <th rowspan="2">심사요소</th> <th rowspan="2">배점</th> <th rowspan="2">평가 기준</th> <th colspan="3">평가점수</th> </tr> <tr> <th>1등급 (문화재수 리계확심 사비대상)</th> <th>1등급 (문화재수 리계확심 사 대상)</th> <th>2등급</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배치 기술 자 능력</td> <td rowspan="4">최근 5년 간 해당 문화재수 리와 동</td> <td rowspan="4">10 (7.5)</td> <td>A. 3건 이상</td> <td>10.0</td> <td>7.5</td> <td>7.5</td> </tr> <tr> <td>B. 2건 이상</td> <td>9.5</td> <td>7.0</td> <td>7.0</td> </tr> <tr> <td>C. 1건 이상</td> <td>9.0</td> <td>6.5</td> <td>6.5</td> </tr> <tr> <td>D. 1건 미만</td> <td>8.5</td> <td>6.0</td> <td>6.0</td> </tr> <tr> <td rowspan="4">배치 기능 자 능력</td> <td rowspan="4">등 이 상 수 리 를 수 행 한 환산건수</td> <td rowspan="4">10 (7.5)</td> <td>A. 3건 이상</td> <td>10.0</td> <td>7.5</td> <td>7.5</td> </tr> <tr> <td>B. 2건 이상</td> <td>9.5</td> <td>7.0</td> <td>7.0</td> </tr> <tr> <td>C. 1건 이상</td> <td>9.0</td> <td>6.5</td> <td>6.5</td> </tr> <tr> <td>D. 1건 미만</td> <td>8.5</td> <td>6.0</td> <td>6.0</td> </tr> </tbody> </table>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 기준	평가점수			1등급 (문화재수 리계확심 사비대상)	1등급 (문화재수 리계확심 사 대상)	2등급	배치 기술 자 능력	최근 5년 간 해당 문화재수 리와 동	10 (7.5)	A. 3건 이상	10.0	7.5	7.5	B. 2건 이상	9.5	7.0	7.0	C. 1건 이상	9.0	6.5	6.5	D. 1건 미만	8.5	6.0	6.0	배치 기능 자 능력	등 이 상 수 리 를 수 행 한 환산건수	10 (7.5)	A. 3건 이상	10.0	7.5	7.5	B. 2건 이상	9.5	7.0	7.0	C. 1건 이상	9.0	6.5	6.5	D. 1건 미만	8.5	6.0	6.0	<p>평가기준인 환산건수에 대한 등급을 조밀하게 조정</p>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 기준	평가점수																																																																																				
			1등급 (문화재 수리계 확심사 비대상)	1등급 (문화재 수리계 확심사 대상)	2등급																																																																																							
배치 기술 자 능력	최근 5년 간 해당 문화재수 리와 동	10 (7.5)	A. 5건 이상	10.0	7.5	7.5																																																																																						
			B. 4건 이상	9.5	7.0	7.0																																																																																						
			C. 4건 미만	9.0	6.5	6.5																																																																																						
배치 기능 자 능력	등 이 상 수 리 를 수 행 한 환산건수	10 (7.5)	A. 5건 이상	10.0	7.5	7.5																																																																																						
			B. 4건 이상	9.5	7.0	7.0																																																																																						
			C. 4건 미만	9.0	6.5	6.5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 기준	평가점수																																																																																								
				1등급 (문화재수 리계확심 사비대상)	1등급 (문화재수 리계확심 사 대상)	2등급																																																																																						
배치 기술 자 능력	최근 5년 간 해당 문화재수 리와 동	10 (7.5)	A. 3건 이상	10.0	7.5	7.5																																																																																						
			B. 2건 이상	9.5	7.0	7.0																																																																																						
			C. 1건 이상	9.0	6.5	6.5																																																																																						
			D. 1건 미만	8.5	6.0	6.0																																																																																						
배치 기능 자 능력	등 이 상 수 리 를 수 행 한 환산건수	10 (7.5)	A. 3건 이상	10.0	7.5	7.5																																																																																						
			B. 2건 이상	9.5	7.0	7.0																																																																																						
			C. 1건 이상	9.0	6.5	6.5																																																																																						
			D. 1건 미만	8.5	6.0	6.0																																																																																						
4	<p>[별표 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p>	<p>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가 입찰공고 일까지 계속하여 6개월(180일) 이상 재 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평가점수 의 80%만 인정한다.</p>	<p>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가 입찰공고일 까지 계속하여 6개월(180일) 이상 재직하 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평가점수의 80% 만 인정한다. 다만, 80%를 적용한 평가점 수가 최저평가점수(평가기준 " D "의 점 수)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평가점수로 적 용한다.</p>	<p>6개월 미만 배치기술자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p>																																																																																								

5	[별표 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수리업경력 심사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전문문화재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비율이 30% 미만이어도 인정한다)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점산정에 유리한 업체의 경력만을 반영한다. (신 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전문문화재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비율이 30% 미만이어도 인정한다)이거나 또는 신설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점산정에 유리한 업체의 경력만을 반영한다. 다. ‘신설업체’란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이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평점산정에 유리한 업체의 경력만을 반영하는 대상에 신생업체 추가
6	[별표 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안전관리심사	(신 설)  2) 재해율 가중평균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과거 3개년 재해율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하며,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재해율 가중평균 =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 재해율×0.5 + 전전년도의 최근 1년전 재해율×0.3 + 전전년도의 최근 2년전 재해율×0.2]	2) ‘최근 3년간’이란 입찰공고 시점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1000대 건설업체 평균 환산재해율’이 발표된 최근 3년을 말한다.  3) 재해율 가중평균은 최근 3개년 재해율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하며,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재해율 가중평균 = [최근년도×0.5 + 최근년도 1년전 재해율×0.3 + 최근년도 2년전 재해율×0.2] 단, 최근년도 1년전 재해율 또는 최근	‘최근 3년’에 대한 기준일 명확화 및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할 사항 (건설업 재해율 가중평균) 추가

		<p>단,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 년도의 최근 1년전 재해율 또는 전전년도의 최근 2년전 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p> <p>3) 안전관리 가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가) 최근 3년간 기업체 산업재해율확인서 1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p> <p>4) ‘건설업 재해율의 가중평균’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1000대 건설업체 평균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으로 한다.</p> <p>(신 설)</p> <p>5)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p>	<p>년도 2년전 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p> <p>4) 안전관리 가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가) 최근 3년간 기업체 산업재해율확인서 1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p> <p>5) ‘건설업 재해율의 가중평균’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1000대 건설업체 평균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으로 한다.</p> <p>6) 해당 문화재수리 입찰공고에 건설업 재해율 가중평균을 제시한다.</p> <p>7)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p>	
7	[별표 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전문교육 이행실태 심사	(신 설)	3)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사일이 6개월(180일) 이상이면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신규취득자에 대한 유예기간 6개월 적용

	심사 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심사 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평가기준 및 평가점수 급간 조정		
				1등급 (문화재수 리계획심 사 대상)	1등급 (문화재수 리계획심 사 대상)	2등급				1등급 (문화재수 리계획심 사 대상)	1등급 (문화재수 리계획심 사 대상)	2등급			
8	[별표 7] 경제성 세부심사방법-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30 (40)	균형가 격에 의한 평가 (균형 가격이 예정가 격 대비 90% 미만 시)	A. 균형가격의 103.5% 이상	23.00	23.00	30.00	균형가 격에 의한 평가 (균형 가격이 예정가 격 대비 90% 미만 시)	30 (40)	A. 균형가격의 100.49% 이상	25.00	25.00	32.00	평가기준 및 평가점수 급간 조정	
				B. 균형가격의 102.5% 이상 103.5% 미만	24.75	24.75	32.50				B. 균형가격의 100.35% 이상 100.49% 미만	26.25	26.25		34.00
				C. 균형가격의 101.5% 이상 102.5% 미만	26.50	26.50	35.00				C. 균형가격의 100.21% 이상 100.35% 미만	27.50	27.50		36.00
				D. 균형가격의 100.5% 이상 101.5% 미만	28.25	28.25	37.50				D. 균형가격의 100.07% 이상 100.21% 미만	28.75	28.75		38.00
				E. 균형가격의 99.5% 이상 100.5% 미만	30.00	30.00	40.00				E. 균형가격의 99.93% 이상 100.07% 미만	30.00	30.00		40.00
				F. 균형가격의 98.5% 이상 99.5% 미만	28.75	28.75	38.00				F. 균형가격의 99.79% 이상 99.93% 미만	29.00	29.00		38.25
				G. 균형가격의 97.5% 이상 98.5% 미만	27.50	27.50	36.00				G. 균형가격의 99.65% 이상 99.79% 미만	28.00	28.00		36.50
				H. 균형가격의 96.5% 이상 97.5% 미만	26.25	26.25	34.00				H. 균형가격의 99.51% 이상 99.65% 미만	27.00	27.00		34.75
				I. 균형가격의 96.5% 미만	25.00	25.00	32.00				I. 균형가격의 99.51% 미만	26.00	26.00		33.00
				9	[별표 9] 문화재수리계 획 세부심사방법	(신 설)	다. 계약담당자는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 를 현장설명을 통해 입찰자에게 이를 교부				평가항목에 부합하는 계획서 작성을 위해 제공되는 자료 추가				

			<p>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계도면 등 설계서(시방서, 예정공정표 등)</li> <li>2)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세부공종 및 표준시장단가(공종별 내역서)</li> <li>3) 물량산출근거(수량산출서)</li> </ol>	
--	--	--	---	--